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Contents

- I 제정 배경 및 목적
- II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III 법령의 주요내용

##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기본적인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88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I 제정 배경 및 목적

'20.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민  
재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사망사고 지속

4.16  
세월호 사건



산업  
재해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종사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필요

# 1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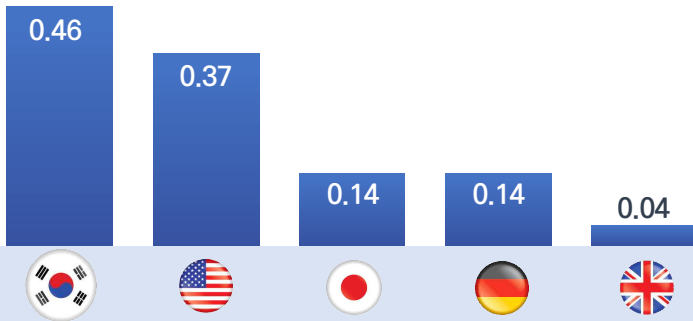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사고사망자 총 882명

• 2021년 10월 사고사망자(잠정) 총 735명

## 2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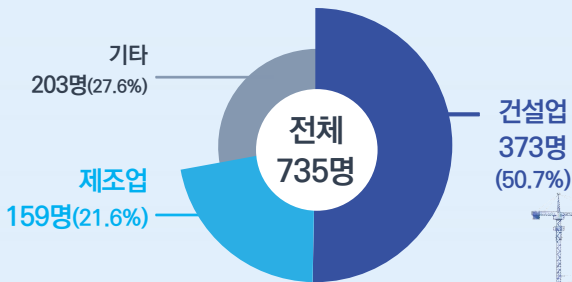
주요국 사고사망만인율 ('19년 기준)



\* 출처 ▲ (일본)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安全衛生年鑑, 후생노동성, 「厚生労働白書, ▲ (독일) BAuA,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 (미국) BLS, 「Workplace Injuries and Illnesses, ▲ (영국) HSE,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 ③ 특히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다수 발생

#### ☑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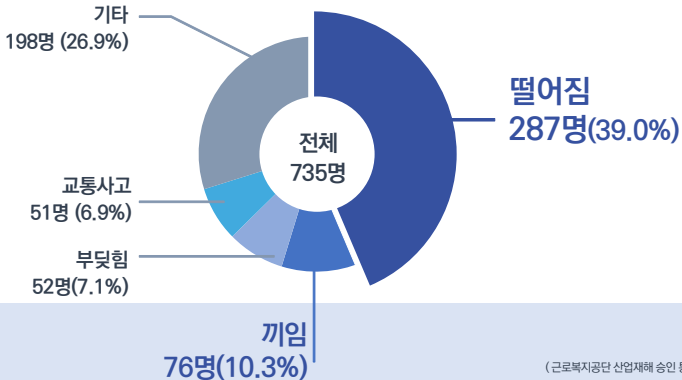
\* 기타: 운수·창고 및 통신업 66명(9%)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계 기준, '21년 1~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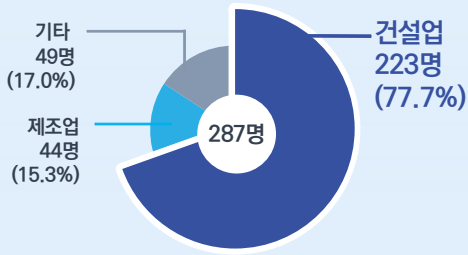


## 4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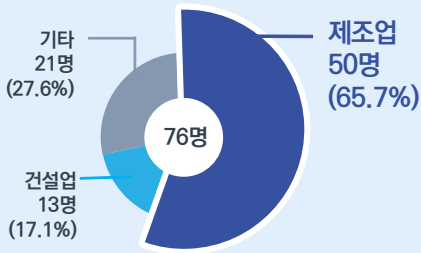


## 5 건설업종은 떨어짐, 제조업은 끼임 재해가 다수 발생

떨어짐



끼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계 기준, '21년 1~10월)

6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차원

법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

처벌규정의  
목적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 7

## 기존수단의 한계와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
- 감독
- 작업중지
- 홍보
- 민간 기술지원
- 안전투자 재정지원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간접요인의 부각

-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 정부 및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
- 위험의 외주화
- 도급 및 용역
- 비정규직 비중
- :
- 최저가 낙찰제

## 8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즉,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취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II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예) 폭발성 물질 제조 시 방호조치 등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예) 5kg 이상 중량물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산업재해 예방 달성**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
| 의무주체 | 자연인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br>- 법인은 양별규정으로 처벌   | 사업주(개인, 법인)를 의무 주체로 규정<br>- 다만,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br>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
| 보호대상 |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br>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br>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영 제67조)  |
| 적용범위 |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br>(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br>(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
| 재해정의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br>① 사망자 1명 이상<br>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br>부상자 2명 이상<br>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br>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br>① 사망자 1명 이상<br>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br>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
| 의무내용 | <p><b>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b></p> <p>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p> <p>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p> <p>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p> <p>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 <p><b>사업주의 안전조치</b></p> <p>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p> <p>② 굴착·발파 등 위험 작업시</p> <p>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시</p> <p><b>사업주의 보건조치</b></p> <p>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p> <p>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 작업</p> <p>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p> |
| 처벌수준 | <p><b>자연인</b></p> <p>(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p> <p>(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p> <p><b>법인</b></p> <p>(사망) 50억원 이하 벌금</p> <p>(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p>    | <p><b>자연인</b></p> <p>(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p> <p>(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b>법인</b></p> <p>(사망) 10억원 이하 벌금</p> <p>(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p>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본사 수사 및 경영책임자 처벌  
 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숙지·준수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III

## 법령의 주요내용

# 1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 ]



##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14~24호)

## 2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 종사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2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 경영 책임자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  
\* 예)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
  - 형식상 직위·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3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

#### 적용 범위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시행일) 2022.1.27.

#### 적용 유예

-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시행일) 2024.1.27.

## 4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조치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사고개요 및 원인 |

### ○○건설

(1,400억원 규모)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타워헤드 설치 후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약 21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① 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②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타워크레인 작업상 추락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사례로 위험성 평가 등 추락사고 예방 절차 X

### △△건설

(1,700억원 규모)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H빔을 하역하던 중 H빔이 떨어져 재해자가 깔려 사망

- ① 하역작업 장소 출입 금지 조치 미실시
- ② 중량을 취급작업 작업계획서 미작성

他 현장 중대재해 발생 1개월 후 동종·유사 재발한 사례로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그 이행 미흡

### ○○공업

(1,500백명 규모)

스프링 가공 프레스 설비를 검사하는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상체가 끼여사망

- ① 검사·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 ② 기계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 배치

검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끼임 사고로 끼임사고 위험요인 개선 위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게을리 함

# 상당수 중대재해는 **위험의 방치**와 **규정(규칙) 미준수의 묵인**에 기인

## 방치와 묵인이

- ☑ **위험관리체계의 실패인지,**
- ☑ **관리시스템의 미비인지,**
- ☑ **조직구조상의 결함** 등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

# 중대법 처벌의 인과관계



# 왜 지키지 않는 것일까? 지킬 수 없는 걸까?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함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안전보건 규정들이  
사업내 지휘체계나 업무방식, 근로형태와 결합되어  
수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대법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성요소도 발굴된 중대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

###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방법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함
- ②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함
- ③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 할 수 있어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②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구성·운영

###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전담조직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기업으로서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하는 업무 절차 마련

절차에 따른 확인·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도입, 그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④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1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

2

유해·위험 요인 확인에 따른 개선

3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각 요소에 대한  
최저기준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각 요소가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도록  
연계되어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

② 해당 평가 기준 마련

③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 담당 인력의 역할

|               |  |
|---------------|--|
| 안전보건<br>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br>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
| 관리감독자         | 생산공정 단위의 안전·보건관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 안전보건<br>총괄책임자 |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br>산업재해 예방 업무 총괄·관리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⑥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보장**
-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배치할 수 있음  
\*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

## |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배치기준

|     |   |                                   |
|-----|---|-----------------------------------|
| 제조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50명 이상)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
| 건설업 | 안전관리자   | (80억원 이상)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2명 이상 |
|     | 보건관리자   | (800억원 이상, 600명 이상) 1명 이상         |
| 그 외 | 안전보건관리담당자<br>* 5개업종 한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
|     | 산업보건의<br>* 제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 5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⑦ **종사자 의견 청취****형식적 X****실질적 위험요인의 발굴과 개선 O**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 및 필요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 노사협의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을 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소통과 공감**

- ① 경영책임자 **의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
- ② 중대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 및 종사자의 의견수렴**
- ③ 위험을 통제/제거하는 수단에 대한 **체감·체화**

**필요시 신상필벌 (信賞必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매뉴얼상의 조치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 ① 위험요인 상호통지, 정보제공, 위험예방조치 조율
- ② 각 업무형태별 안전보건 관련 업무수행 중 적절한 지시를 받는지 확인

1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마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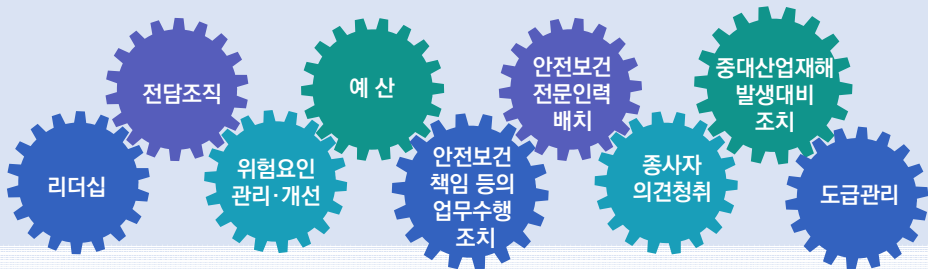
수급인 등의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조선업: 안전·보건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



중대재해 예방

업종, 규모, 직종, 고용형태, 경영상태 등에 따라 각 기업의 위험요소는 다르며 위험의 제거 및 통제 수단도 다름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①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의 의미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해 조사와 결과분석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원인 파악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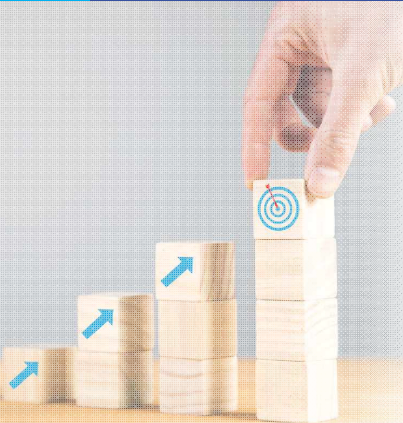
## 3-① 개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란 ?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인 시정명령 등

이행 대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처분’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①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선원법, 항공안전법, 연구실안전법 등
- 개별 규정에서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확보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 점검 가능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예산 등 추가 편성·집행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②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미실시 교육 지체없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 ⑤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 6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

### 경영책임자 처벌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 2분의 1까지 가중

### 양벌규정

- ✓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부과(科)
  - 제6조제1항 위반: 50억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제2항 위반: 10억원 이하의 벌금
-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7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           |  |
|-----------|--|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경영 방안<br>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
| 교육시간 및 비용 | 총 20시간 범위<br>교육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
| 교육 실시기관   | 안전보건교육기관<b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br>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 | 안전보건교육 진행 절차

분기별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



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통보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관 등
  - 교육일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연기 요청: 교육 실시 7일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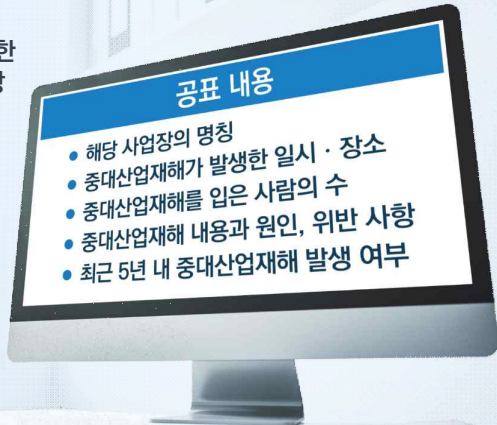


교육 의무 불이행 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

## 8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 **대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
-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 내용 통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30일 이상 기간 내)
- ✔ **방법** 관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 공표 기간: 1년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감사합니다